|  |  |  |
| --- | --- | --- |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행 전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65호  <국무원의 대외무역 회생∙호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국발[2016]27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및 해관총서가 일부를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 선택하여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행을 전개하며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곤산 종합보세구, 소주공업원 종합보세구, 상해송강 수출가공구, 하남정주 수출가공구, 정주신정 종합보세구, 중경서영 종합보세구 및 심천염전 종합보세구에서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행을 전개한다.  상술한 시행구역 내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관리 유관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은 스스로 시행구역 소재지 주관세무기관 및 해관에 신청하여 시행기업이 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에서 법에 의거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처리한다.  2. 시행기업은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의 효력발생일부터 아래의 세수정책을 적용 받는다.  2.1 시행기업이 자가용 설비(기기설비, 기초건설 물자 및 사무용품 포함)를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 수입관련 증치세 및 소비세(이하 “수입세수”라 약칭) 징수를 면제∙유예한다. 상술한 면제∙유예받은 수입세수는, 해당 수입한 자가용 설비의 해관감독관리 연한평균에 따라 각 년도 별로 나누어 분담하며, 매년 연말 당해년도에 면제∙유예받은 수입세수에 대해 당해 내∙외수 판매비율에 따라 나누어, 대외판매 비율부분은 시행기업 소재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세수정책으로 집행하고, 대내(내수)판매 비율부분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외 (이하 “구외(區外)”라 약칭) 세수정책에 맞추어 세금을 추징한다.  2.2 자가용 설비를 수입한 것을 제외하고, 구매한 아래의 화물에는 보세정책을 적용한다.  2.2.1 국외에서 구매하여 시행구역에 들어온 화물  2.2.2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시행구역 제외) 또는 해관보세감독관리장소에서 구매하여 시행구역에 들어온 보세화물  2.2.3 시행구역 내 비(非)시행기업에서 구매한 보세화물  2.2.4 시행구역 내 기타시행기업에서 구매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  2.3 판매한 아래의 화물은 세무기관에 증치세 및 소비세 납부신고를 한다.  2.3.1 국내 구외(區外)로 판매한 화물  2.3.2 보세구 및 퇴세 기능을 갖추지 않은 보세감독관리장소에 판매한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 제외)  2.3.3 시행구역 내 기타 시행기업에 판매한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 제외)  시행기업이 판매한 상술한 화물 중 보세화물이 포함된 경우 보세화물이 해관특수감독관구역 진입 시 상태에 따라 해관에 수입세수 납부신고를 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납세 유예 이자를 추가 납부한다.  2.4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해관보세감독관리장소에 판매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은 계속 보세정책을 적용 받는다.  2.5 판매한 아래의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제외)에는 수출퇴(면)세정책을 적용하고, 세무기관은 해관이 제공한 이와 상응하는 수출화물 신고서 전자 데이터에 근거하여 시행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2.5.1 해외로 수출한 화물  2.5.2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시행구역 및 보세구 제외) 또는 해관보세감독관리장소(퇴세 기능을 구비하지 않은 보세감독관리장소 제외)에 판매한 화물  2.5.3 시행구역 내 비(非)시행기업에 판매한 화물  2.6 재정부, 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기업에는 구외(區外)관세, 증치세, 소비세의 법률 및 법규를 적용한다.  3. 구외(區外)에서 시행기업에 판매한 가공무역화물은 계속 현행 세수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시행기업에 판매한 기타화물(물, 증기, 전력, 가스 포함)에는 수출퇴세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 및 소비세를 납부한다.  4. 세무 및 해관 2개 부처는 세수징수관리와 화물감독관리의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수출퇴세정책을 적용 받는 화물에 대해서는 해관이 세무부처에 수출신고서 세관수속정보 전자 데이터를 전송한다.  5. 본 공고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6년10월14일 |  | **关于开展赋予海关特殊监管区域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6年第65号  根据《国务院关于促进外贸回稳向好的若干意见》（国发〔2016〕27号），国家税务总局、财政部和海关总署选择部分海关特殊监管区域开展赋予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在昆山综合保税区、苏州工业园综合保税区、上海松江出口加工区、河南郑州出口加工区、郑州新郑综合保税区、重庆西永综合保税区和深圳盐田综合保税区开展赋予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  　 上述试点区域内符合增值税一般纳税人登记管理有关规定的企业，可自愿向试点区域所在地主管税务机关、海关申请成为试点企业，向主管税务机关依法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  　 二、试点企业自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生效之日起，适用下列税收政策。  　 （一）试点企业进口自用设备（包括机器设备、基建物资和办公用品）时，暂免征收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以下简称进口税收）。上述暂免进口税收按照该进口自用设备海关监管年限平均分摊到各个年度，每年年终对本年暂免的进口税收按照当年内外销比例进行划分，对外销比例部分执行试点企业所在海关特殊监管区域的税收政策，对内销比例部分比照执行海关特殊监管区域外（以下简称区外）税收政策补征税款。  　 （二）除进口自用设备外，购买的下列货物适用保税政策：  1. 从境外购买并进入试点区域的货物。  2. 从海关特殊监管区域（试点区域除外）或海关保税监管场所购买并进入试点区域的保税货物。  　 3. 从试点区域内非试点企业购买的保税货物。  　 4. 从试点区域内其他试点企业购买的未经加工的保税货物。  　 （三）销售的下列货物，向税务机关申报缴纳增值税、消费税：  　 1. 向境内区外销售的货物。  　 2. 向保税区、不具备退税功能的保税监管场所销售的货物（未经加工的保税货物除外）。  　 3. 向试点区域内其他试点企业销售的货物（未经加工的保税货物除外）。  　 试点企业销售上述货物中含有保税货物的，按照保税货物进入海关特殊监管区域时的状态向海关申报缴纳进口税收，并按照规定补缴缓税利息。  　 （四）向海关特殊监管区域或者海关保税监管场所销售的未经加工的保税货物，继续适用保税政策。  　 （五）销售的下列货物（未经加工的保税货物除外），适用出口退（免）税政策，税务机关凭海关提供的与之对应的出口货物报关单电子数据审核办理试点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  　 1. 离境出口的货物。  　 2. 向海关特殊监管区域（试点区域、保税区除外）或海关保税监管场所（不具备退税功能的保税监管场所除外）销售的货物。  　 3. 向试点区域内非试点企业销售的货物。  　 （六）除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外，试点企业适用区外关税、增值税、消费税的法律、法规。  　 三、区外销售给试点企业的加工贸易货物，继续按现行税收政策执行;销售给试点企业的其他货物（包括水、蒸汽、电力、燃气）不再适用出口退税政策，按照规定缴纳增值税、消费税。  　 四、税务、海关两部门加强税收征管和货物监管的信息交换。对适用出口退税政策的货物，海关向税务部门传输出口报关单结关信息电子数据。  五、本公告自2016年11月1日起施行。  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  2016年10月14日 |